

일본의 「언론표현의 자유」와 「보도피해구제」의 현상

村上孝止

일본 매스컴 윤리간담회 전국협의회 고문

일본 헌법상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답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도 강력하게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의 패배로 인해 천황주권의 입헌군주국에서 국민주권의 민주주의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헌법은 1946년에 제정되었지만 이 헌법에서 「언론, 출판, 그 외 일체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한계선으로서 「공공의 복지」를 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언론의 자유」가 강력하게 보장되어있는 이유로는 이 헌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의심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는 미디어 관련법으로서 방송법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국에는 신문법은 없어도 신문을 위한 왕립위원회 등이 있긴 합니다만 일본에는 신문업이나 출판업을 규제하는 법률이었을 뿐 아니라 감독관청도 없는 상태가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정부나 관공서에서는 이를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이와 함께 이런 상태를 존중하는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기도 합니다. 신문업계에는 현재 이러한 사실이 선배들의 노력에 의해 얻어지고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 가기는 하지만 그것을 아는 신문업계나 출판업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대단한 금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1987년에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제 21 조 제 1 항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동제 4 항에서 「언론 및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여기에 대한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헌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언론이나 보도에 의한 피해의 구제는 형법과 민법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법적인 관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법률제도에는 자유로운 언론에 대한 인권상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명예권의 침해(명예훼손), 프라이버시의 권리침해, 초상권의 침해 등 세가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법과 민법에 규정이 있습니다만 프라이버시의 권리와 초상권에 대해서는 판례상 침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을 뿐 실정법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에서의 「언론 보도」에 의한 피해 구제방법 등의 현황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소송에 의한 구제입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그리고 가장 확실한 「피해구제방법」입니다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는 형사소송에 의한 방법과 민사소송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 설명으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형법의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므로 언론 보도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면, 정찰당국이 수사를 해서 확실히 법을 위반하여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소하여 재판에 부칩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하여도 기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소가 명예에 대해 법에 위반되는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하면, 가해자는 명예훼손죄의 범인으로서 처벌 고 그것에 의해 피해자의 명예가 간접적인 형태로 회복됩니다.

한편, 민사의 경우에는 피해자 자신이 원고가 되어, 대리인을 의뢰하여도 자기 책임으로서, 직접 가해자를 상대하여 손해배상이나 사죄광고를 목적으로 소송을 일으키게 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배상금 등을 취할 수 있고, 손상된 명예도 형사재판 때보다는 직접적인 형태로 구제됩니다.

법률상으로 명예 권을 침해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형사 또는 민사 중의 하나 또는 양쪽으로 소송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외의 구제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디어 법에 기초한 구제방법에 대해서 입니다.

일본에는 예전에(1945 년까지) 신문지법, 출판법, 영화 법 등의 미디어 법이 있었지만, 현재는 미디어 법으로서 방송법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방송법은 제 4 조에서 권리의 침해를 본인 또는 그의 직접 관계인이 방송이 있었던 날로부터 2 주 내에 청구하면, 진실의 여부를 가려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판명된 날로부터 이를 이내에 정정, 취소의 방송을 하여 구제되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그 규정에 기초한 청구는 청구 기한이 너무 짧기도 해서 각 방송국 마다 연간 1 건이 발생할까 말까 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옹호위원 법에 의한 구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권옹호위원이라고 하는 제도는 새로운 헌법에 의해 강력하게 보호 받게 된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 그 옹호와 자유인권사상의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해 1949 년에 발족된 것으로서 법무국의 인권옹호부나 인권옹호위원에 인권침범에 대한 신고가 있거나 옹호부나 위원이 독자적으로 탐지한 인권 침범 사건에 대해 인권옹호위원이 조사에 착수하여 심판의 사실을 인정하면 고발, 권고, 설명, 원조, 배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